배출권거래제법안 소개 및 기업 지원방안

2012. 10

에너지관리공단

Contents

Ⅰ 배출권거래제 개관

Ⅱ 주요국 동향

Ⅲ 주요 경과, 법안, 시행령 주요 내용

Ⅳ 기업 지원방안

배출권거래제 개관

탄소시장 개관

탄소시장의 생성 배경

-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가 발효* (2005.02)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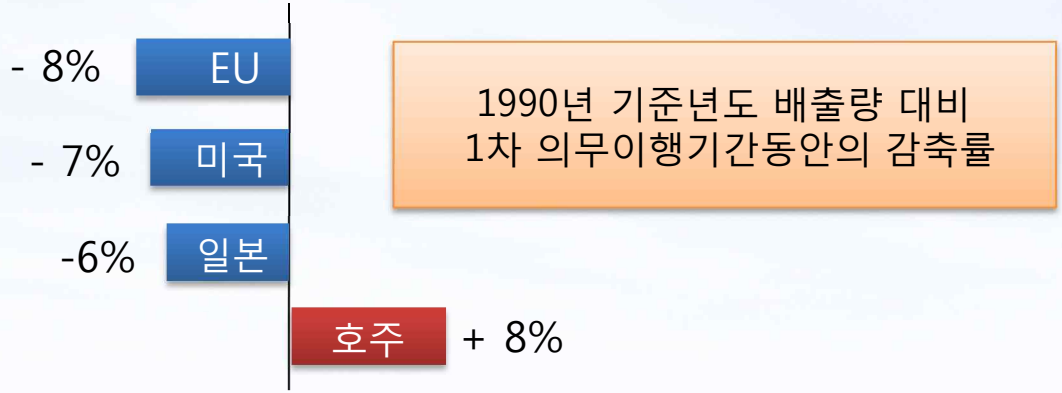

- 유럽배출권거래제도(EU-ETS)의 출범 (2005년)

  새로운 할당 배출권(EUAs)이 생성되고 이러한 할당 배출권과 교토배출권 (CERs, ERUs)과 일부 연계되면서 탄소시장이 확장

’ 선진국 ’90대비 25~40% 감축노력(매년 인벤토리, 2년마다 실적 보고)
개도국 ’20년까지 BAU대비 NAMA 실시(4년마다 국가보고 제출), 녹색기후기금 설립(12년까지 300억$, 20년까지 1,000억$)

탄소시장의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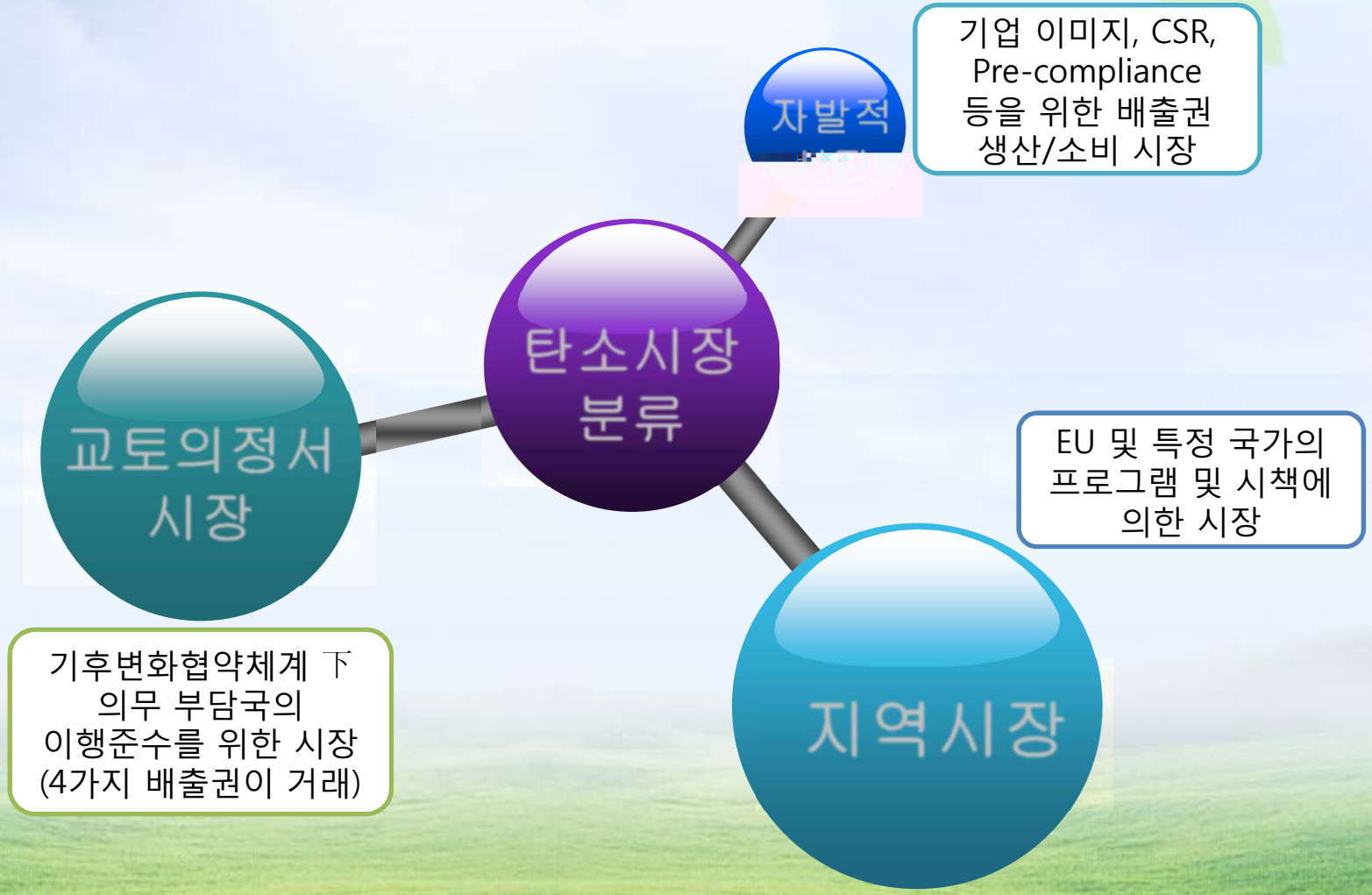
탄소시장
분류
자발적
기업 이미지, CSR, Pre-compliance 등을 위한 배출권 생산/소비 시장
교토의정서 시장
기후변화협약체계 下 의무 부담국의 이행준수를 위한 시장 (4가지 배출권이 거래)
지역시장
EU 및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 및 시책에 의한 시장

세계 탄소시장 현황

1 탄소시장의 분류

교토의정서 시장

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국가 할당 및 교토 메커니즘* 에서 정의된 배출권**이 생산, 매매, 소비되는 시장

* CDM(청정개발체제), JI(공동이행제도), IET(국제배출권거래제)

** AAUs(Assigned Amount Units), RMUs(Removal Units), ERUs(Emission Reduction Units), CERs(Certified Emission Reduction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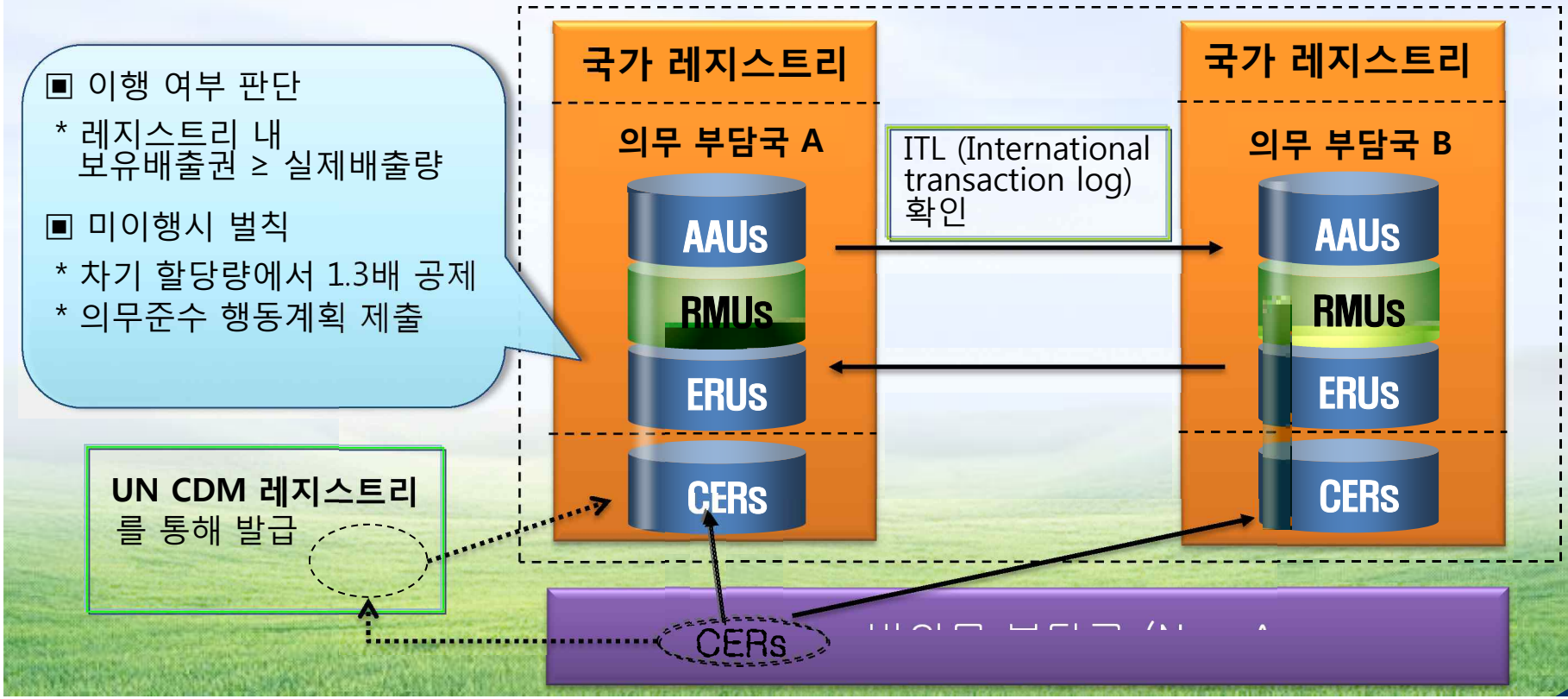

세계 탄소시장 현황

1 탄소시장의 분류

지역 시장

- 교토체계가 아닌 지역공동체 (EU), 특정 국가 내의 프로그램 또는 시책에 의하여 생산된 할당배출권(Allowance) 등이 거래되는 시장
- 설계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장, 프로그램이 존재

  ※ 한국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(KAUs)가 시행될 경우, 광의의 지역시장으로 분류 가능

①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: EU-ETS (유럽배출권거래제도)

② 특정국가 또는 국가내 지역, 부문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: NZ-ETS (뉴질랜드), RGGI (미국), NSW(호주) 등

③ 기타 프로그램 : CRC (영국), 일본 동경 배출권거래제도

세계 탄소시장 현황

1 탄소시장의 분류

자발적 시장

- 구매 또는 참여 동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, 기업이미지(CI), Pre-compliance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토체계 바깥에서 형성되는 시장
- 현재 자발적 시장은 참여과정이 자발적이고, 미이행에 대한 벌칙이 없는 CCX 프로그램 및 특정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감축실적으로 구분 가능함

① CCX (Chicago Climate Exchange)

② 프로젝트 감축실적 거래 시장

Ⅰ. 세계 탄소시장 현황

2 탄소시장의 규모 (2011년 : 거래량(103억톤), 거래금액(1,760억달러, 한화 202조원)

구 분.	2010년			2011년		
	거래량 (백만tCO_2)	가 치 (백만US$)	평균단가 (US$)	거래량 (백만tCO_2)	가 치 (백만US$)	평균단가 (US$)
할 당 시장	**7,162**	**134,935**	**18.84**	**8,081**	**148,881**	**18.42**
-EU-ETS (EUAs)	6,789	133,598	19.68	7,853	147,848	18.83
-AAUs	62	626	10.10	47	318	6.77
-RMU	-	-	-	4	12	3.00
-NZU	7	101	14.43	27	351	13.00
-RGGI	210	458	2.18	120	249	2.49
-기타	94	151	1.61	30	103	3.43
현물&2차 오프셋시장	**1,275**	**20,637**	**16.19**	**1,822**	**23,250**	**12.76**
선물&1차 프로젝트시장	**334**	**3,620**	**10.84**	**378**	**3,889**	**10.29**
-Pcer (pre-2013)	124	1,458	11.76	91	990	10.88
-Pcer(post-2012)	100	1,217	12.17	173	1,990	11.50
-pERU	41	530	12.93	28	339	12.11
-자발적 시장	69	414	6.0	87	569	6.54
총 계	**8,772**	**159,191**	**18.15**	**10,281**	**176,020**	**16.52**

3 탄소배출권의 가격 추이 (1)

CERs 가격 추이 ('05년 ~ 현재)

- 05년부터 금융위기 발생 (2008년 하반기)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향 추이를 나타냈으나, 금융위기로 인한 구매력 약화 등으로 09년에는 최하 7유로 대까지 하락
- 그러나 포스트 교토 타결 지연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까지는 10유로 수준에서 강력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음
- 2011년 하반기 접어들면서 유럽 경제의 침체, 포스트 교토체계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CER 가격은 5유로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음
- 년도별 CER 평균가격 추이

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11년
7.52 US $ (6.03 Euro)	11.12 US $ (8.84 Euro)	16.28 US $ (11.86 Euro)	22.21US $ (15.20Euro)	15.97US $ (11.46 Euro)	16.65US $ (12.52Euro)	13.78US $ (9.88Euro)

세계 탄소시장 현황

3 탄소배출권의 가격 추이 (2)

EUAs 가격 추이

- 1단계 가격 형성 추이 (2005~200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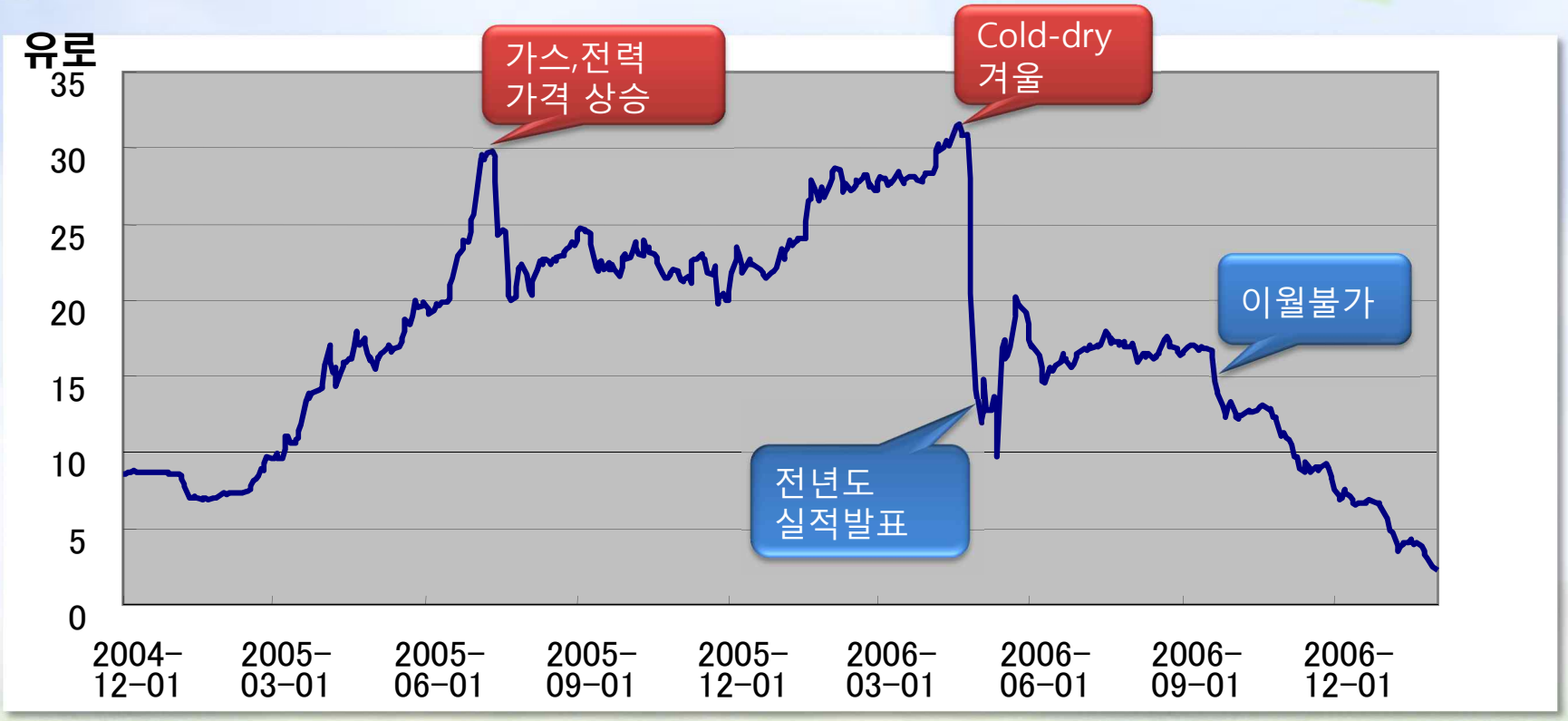

* 가스가격 상승 → 가스수요 감소. 석탄수요 증가 → 유럽전체 배출량 증가 → EUAs 가격 강세
* 추운 겨울 → 전력 수요 등 증가 → 유럽전체 배출량 증가 → EUAs 가격 강세

세계 탄소시장 현황

3 탄소배출권의 가격 추이 (3)

EUAs 가격 추이

- 2단계 가격 형성 추이 (2008~현재)

* 금융위기 이전에는 20~30유로 사이의 박스권에서 시세가 형성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~2010년은 13~14유로수준, 2011년 연말에는 7유로대까지 가격이 하락함

4 탄소시장의 향후 전망

탄소 배출권의 수급 전망 (2008~2012년)

- 전체적으로 배출권의 수요가 공급 가능량보다는 중기적으로 많은 구도
- AAUs의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,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보유 AAUs는 이월(banking)이 허용되므로 1차 의무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
◈ 초과 수요량 : 136백만톤
- 1단계의 잠재수요량 : 1,392백만톤
- 1단계의 공급량 : 계약된 CERs, ERUs의 인도율을 절반 정도로 가정하고 조정된 공급 예상량 및 AAUs의 공급량을 고려

포스트 교토 전망 (2013년~)

- COP 16(2010년)에서 협상 채택을 위한 틀은 마련되었으나,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선-개도국 감축목표는 뒤로 미루어짐 (2015년까지 논의 예정)

  * 2011년 UN 협상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양상이 지속
  * EU는 외부여건에 관계없이 90년 대비 20% 감축 선언

- 일본, 캐나다,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불참을 명확히 밝혔으며,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

주요국 동향

EU 동향 (1)

호주 동향 (1)

감축목표

-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감축목표 : **1990년 대비 8% 증가**
  * 2020년 중기 감축목표 : 2000년 대비 5% 감축

배출현황

- 석탄의존도가 높으며, **에너지부문**과 **농업부문 배출량 높은 특징**
  * '09년 호주 배출량 5.4억tCO2 중 에너지부문 76.5%, 농업부문 15%

2009. 11월 : 농업부문을 포함시키지 않은 CPRS의 개정 법안을 하원 승인

2010. 2월 : CPRS가 하원에서 가결, 그러나 상원에서 거부

2011. 7월 : 국가보고서(청정에너지미래)에서 국가 기후변화전략 및 **"청정에너지종합법안(Clean Energy Legislative Package)"** 발표

2011. 11월 : **"청정에너지종합법안*" 상원 가결**

➢ **탄소가격제 도입 상세 내용 포함한 총 18개 법안으로 구성**

2012. 7월 ~ : **단계적 배출권거래제 시행 예정**

① 탄소가격제 (고정가격제) ② 배출권거래제 (유동가격제)

* 대상 온실가스 : CO_2 , CH_4, N_2O, PFCs
* 할당대상 : 연간 25,000tCO_2 이상의 고정연소, 산업공정, 탈루성배출, 폐기물

호주 동향 (2)

'12. 7. 1 ~ '15.6.30

1 탄소가격제 (고정가격제)

- 고정 가격의 비용을 부담
  - 배출량 1톤당 고정가 (A$ 23)

'15.7.1 ~

2 배출권거래제 (유동가격제)

- 배출상한(cap)을 토대로 배출권 할당 및 거래

탄소가격제

탄소가격제 관리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배출량 1톤에 상응하는 탄소 단위를 고정가(A$ 23)에 구매

- 탄소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2.5% 씩 인상
- 고정 가격으로 구입한 배출권은 정부에 자동 반납(surrender)되며, 거래 및 예치 불가
- 탄소집약도가 높은 일부 제조업체는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아, 이를 반납하거나 판매 가능

호주 동향 (3)

- **관리업체들은 각 회계연도마다 배출량을 산정하여 6. 15일까지 배출량의 75%에 상응하는 탄소단위를 정부에 반납해야 함**
  - 반납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 납부
- **국제 탄소크레딧 (CERs, ERUs) 은 오프셋 사용 불가, 자국 오프셋 프로그램인 CFI 크레딧은 감축의무의 5% 까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**

유동가격제

- **배출 상한(cap)을 토대로 배출권이 경매를 통해 할당되는 배출권거래제도**
  - 일부 무상할당 허용
  - 배출 발생 회계연도의 차기년도 2월 1일까지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단위를 반납해야 함
  - 반납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 납부
- **탄소가격은 사전에 설정된 범주 안에서 제한됨**
  - 배출권 가격 제한은 2018년 7월에 폐지될 예정
- **국제 탄소크레딧은 감축의무의 50%까지 사용 가능, 자국 오프셋 프로그램인 CFI 크레딧은 무제한 사용 가능**

뉴질랜드 동향 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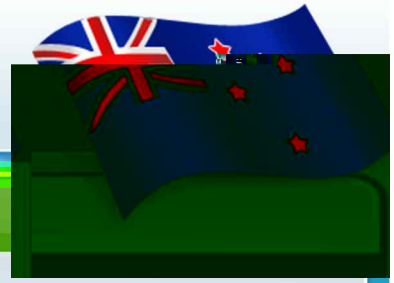

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(CCRA), 2009년 개정

2015년까지 모든 부문의 6대 온실가스를 포함 ('08년부터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)

부문별 참여 기간 차등

- **산림부문** (2008~) → 고정에너지, 산업공정, 수송 연료(2010. 7~) → 합성가스 및 폐기물(2013. 1~) → **농업부문**(2015. 1~)

탄소집약도 방식으로 산업마다 특정 탄소집약도 표준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

- 생산량당 탄소집약도에 따라 60%~90%를 무상 배분
  * 2013년부터 연간 1.3%만큼 단계별 폐지(phasing out)
- ETS 시행으로 인한 초기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**어업과 1990년 이전 산림부문에 무상할당**

캡(cap)이 설정되지 않은 할당

- 인정된 활동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할당
- 명시적 숫자상 제약이 없음

뉴질랜드 동향 (2)

2010년~2012년은 과도기로 지정

뉴질랜드 기업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교토크레딧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, 산림부문 크레딧은 해외 판매도 가능 (향후 해외 offset 사용 가능량 제한 검토)

* CERs, ERUs, RMUs, AAUs

- 과도기(2010. 7. 1~2012. 12. 31) 동안 비산림 부문은 해외 수출 불가

산림 할당

- 1990년 이전 산림을 2002. 11. 1 이전 구매한 소유주는 60NZU/헥터 할당
- 2002. 11. 1 이후 구매한 소유주는 39NZU/헥터 할당

- 뉴질랜드는 산림부문 흡수가 32%를 차지하며, 벌목 감소가 의무 감축을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므로 산림부문이 ETS에 먼저 편입됨

뉴질랜드 동향 (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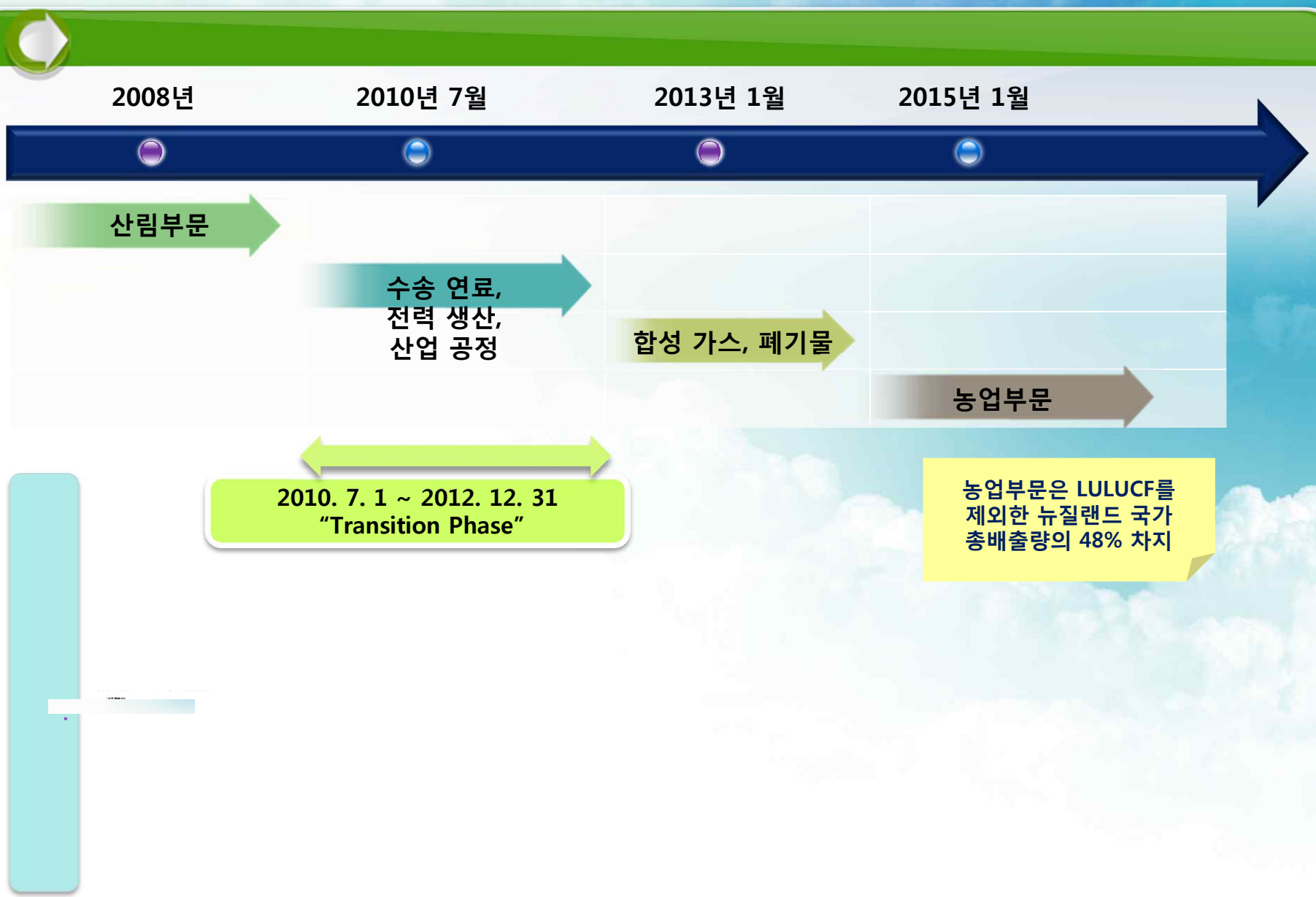
2008년
2010년 7월
2013년 1월
2015년 1월
산림부문
수송 연료,
전력 생산,
산업 공정
합성 가스, 폐기물
농업부문
2010. 7. 1 ~ 2012. 12. 31
"Transition Phase"
농업부문은 LULUCF를
제외한 뉴질랜드 국가
총배출량의 48% 차지

기타 국가 동향 (1)

일본

- **(전국단위)** '10. 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,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
- **(지역단위)** 도쿄도 '10. 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이고, 사이타마현이 '11. 4월, 교토부가 '11. 10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

미국

- **(전국단위)**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중
- **(WCI*)** 미 캘리포니아주, 캐나다 퀘백주가 '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예정,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,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중
  * 북미 서부 주들의 협의체로 '12~'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
- **(RGGI)** '05년 미 북동부 10개주에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(발전부문 대상 전액 유상경매)

중국

- (추진현황) '13년부터 7개*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시행하고, '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 계획
  * 베이징, 충칭, 광둥, 허베이, 상하이, 텐진, 선전(중국 GDP의 약 ¼)

** 국무총리실 보도자료('12. 5. 2) 참고*

기타 국가 동향 (2)

- **(추진현황)** '11.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시행 중, '11년 4월부터 전국단위 에너지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
- **(석탄세)** '10. 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석탄에 대하여 톤당 50루피(약 $1)의 세금 부과중

- **(멕시코)** 배출권거래제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기본법(General Law on Climate Change) 상원 통과('11. 12월)

대만, 칠레, 터키, 브라질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중

주요 경과, 법안, 시행령 주요 내용

-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 증가
  -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(84.9%)와 산업공정(9.3%)에 집중 – 2009년 기준

국내 정책 환경

“저탄소 녹색성장” 을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 (2008.08)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(2009.12)

◈ 기후변화 대응, 에너지 정책,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괄

※ “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(2009.07)을 통하여 10대 과제 선정

- **온실가스 감축, 신재생에너지개발과 보급확대, 기후변화 적응, 녹색건축, 녹색도시, 녹색교통, 녹색생활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**

온실가스관리체계 마련 (2010.4)

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

◈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처별 업무분장*을 확정

- **총괄기관은 목표관리제도의 종합 지침 및 기준제정,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 담당**
- **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별 목표설정,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등 담당**

[참 고]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

목 적 : '08년 8.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, 이를 법 ·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

※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경과

('09.2.25)	('09.11.09)	('09.12.03)	('09.12.29)	('10.4)
기본법(정부안)확정	국회 기후특위	국회 법사위	**국회 본회의 의결**	법 공포·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정

주요내용

-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· 시행 (제9조)
- 기후변화대응,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· 시행 (제40, 41조)
-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(제42조)
  : 온실가스 감축목표,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, 에너지 자립 목표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목표
-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· 운영 (제44, 45조)
  :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,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·운영
-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(제46조)
  :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, 등록·관리방법 및 거래소설치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

[참 고] 목표관리제 개요

추진 절차

① 정부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목표를 협의·결정
②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
③ 목표를 이행한 후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·검증·보고
④ 정부가 목표이행 여부를 평가

관리업체 선정 (3.31) → 지정·고시 (6.30) → 목표 설정 (9.30) → 이행계획 제출 (12.31) → 목표이행 (차년) → 이행실적 보고 (차차년 3.31)

* 맨처음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명세서 제출 및 목표설정후 차차년부터 목표이행

표준 일정

법안 처리 주요 경과

'09. 07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반영

-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거래제 방식 확정 및 법적 기반 마련
- 국제협상,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

'10. 01 녹색성장 기본법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

- 배출허용량 할당방법, 등록 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정함

10.11~11.3 입법예고, 재입법예고 (11.03.01~03.03), 법제처 심사 등

'11. 4. 15 법안 국회 제출 → "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"

'11. 6. 27 기후변화대응 · 녹색성장특위 구성

'12. 5. 2, 14 국회 심의 완료 (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), 법안 공포 (2012.05.14)

- 법률안 특위 상정 (2011.11), 법률안 특위 통과 (2012.02.08)

'12. 7. 23 배출권거래제법안 시행령 입법예고

- 일정 :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·국무회의, 시행령 제정 시행 (11.15)

법안 주요 내용 (총 8장 43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)

제 1장 총 칙	
제 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	▪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▪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
제 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등	▪ 할당 대상업체 지정,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▪ 배출권의 할당, 무상할당비율 결정, 조기감축실적 인정
제 4장 배출권의 거래	▪ 배출권 거래, 거래의 신고 ▪ 배출권 거래소, 거래시장의 안정화
제 5장 배출량의 보고 · 검증 및 인증	▪ 배출량의 보고 · 검증 ▪ 배출량의 인증
제 6장 배출권의 제출, 이월 · 차입, 상쇄 및 소멸	▪ 배출권의 제출,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▪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▪ 배출권의 소멸, 과징금
제 7장 보 칙	▪ 금융 · 세제상의 지원 ▪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▪ 실태조사, 이의신청, 수수료 등
제 8장 벌 칙	▪ 벌칙, 과태료
부 칙	▪ 1차, 2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▪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

법안 주요 내용

1 시행 시기

◈ **(부칙 제2조)** 제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2차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- (제2조 정의) 계획기간은 5년 단위임

※ 기본계획 수립기간 : 10년 (제4조 :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시작시점은 1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은 1, 2차 기간에 한하여 3년으로 부칙에서 정함

2 유 · 무상할당

◈ **(부칙 제2조)** 1차 ,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권 총수의 100분의 95이상으로 규정

- (제12조 3항)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, 국제적 동향, 물가 등을 고려하여 유 . 무상 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

법안 주요 내용

3 할당 대상업체

◈ **(제8조)**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중 ①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,000tCO2 이상인 업체이거나 25,000tCO2 이상인 사업장
②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·고시

※ 기본법상 관리업체 지정기준

구분	2011. 12. 31 까지		2012. 1. 1 부터		2014. 1. 1 부터	
	업체기준	사업장 기준	업체기준	사업장 기준	업체기준	사업장 기준
온실가스(tCO_2)	125,000	25,000	87,500	20,000	50,000	15,000
에너지(TJ)	500	100	350	90	200	80

4 배출량의 보고 · 검증 및 인증

◈ **(제24조)**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·보고·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

- **배출량 보고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함**
- **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의 배출량 MRV 체계를 연계 활용하여 부담 최소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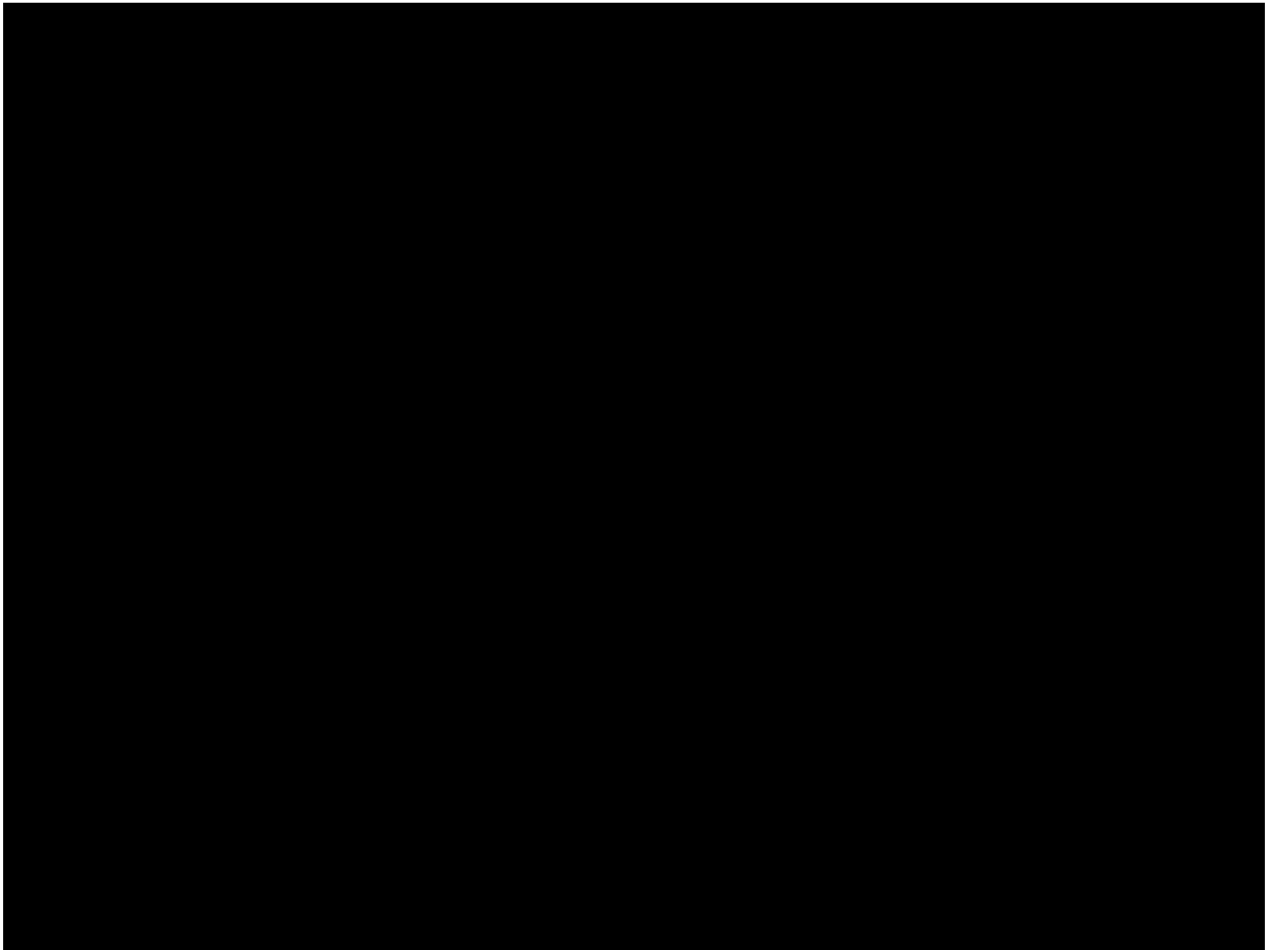

법안 주요 내용

6 탄소누출업종 관련

◈ **(제5조)**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 부문별·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

EU-ETS의 경우 경매를 주된 할당방식으로 진행하는 3기부터 본격 적용

- **①탄소집약도 5% & 무역집약도 10% 이상, ②탄소집약도 30% 이상, ③무역집약도 30%이상**

7 제 3자 거래 참여

◈ **(제20조)**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.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

- (부칙 제3조)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: 2015년부터 6년 범위 내

초기 시장 단계에서의 투기적 시장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마련

법안 주요 내용

8 과징금

◈ **(제33조)**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이행년도 배출권 평균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

산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상한선을 규정함

- **EU-ETS Phase 1,2 : 톤당 40유로/톤당 100유로, 미국 ACES 법안 (미시행) : 시장가격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및 차기 이행기간에 초과배출량만큼 할당량 삭감, 호주 청정에너지 법안 (2015.07 시행예정) : 가격상한 (A $ 20 이상)**

9 추진체계 (governance)

◈ **(제7조)**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하였고, 간사위원,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
◈ **(제8~12조)** "주무관청"에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·관리, 신규업체에 대한 할당 실시. 배출권 등록부를 "주무관청"에 두도록 규정 . 목표관리제와의 중복적용 제외 명문화

법안 주요 내용

10 기타 (배출권 할당의 조정, 상쇄, 금융 · 세제상의 지원 등)

◈ **(제16조)** 주무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가능

-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
-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, 생산품목의 변경,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

◈ **(제29조, 30조)**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국내외 부분으로 규정하여 해외 offset 허용 가능성을 열어 둠

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,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

◈ **(제35조)**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 ·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중소기업 우선 지원)

시행령 주요 내용 (입법예고 기준, 총 8장 50개 조항, 부칙 3개 조항)

제 1장 총 칙	▪ 목적, 정의
제 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	▪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▪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, 할당위원회 구성 및 운영
제 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등	▪ 할당 대상업체 지정, 배출권 할당의 기준,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▪ 무역집약도/생산비용의 기준, 조기감축실적의 인정,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, 배출권 할당의 취소
제 4장 배출권의 거래	▪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, 배출권거래의 신고 ▪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 · 지정 및 감독,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
제 5장 배출량의 보고 · 검증 및 인증	▪ 배출량의 보고 · 검증, 검증기관의 지정, 배출량 인증위원회
제 6장 배출권의 제출, 이월 · 차입, 상쇄 및 소멸	▪ 배출권의 제출, 배출권의 차입, 배출권 이월 · 차입의 절차 ▪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,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
제 7장 보 칙	▪ 금융 · 세제상의 지원 ▪ 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▪ 이의신청, 수수료, 권한의 위임, 위탁
제 8장 벌 칙	
부 칙	▪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▪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

시행령 주요 내용 (입법예고 기준)

주무관청 등 governance

시행령 주요 내용 (입법예고 기준)

2 무상할당 비율 및 민간업종에 대한 100% 무상할당 기준

◈ 1차 계획기간(15~17) 100%, 2차 계획기간 (18~20) 97%, 3차 계획기간(21~25) 이후는 90%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함

-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0년 단위 장기계획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

◈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100% 무상할당

① 생산비용 발생도 5% 이상 + 무역집약도 10% 이상

② 생산비용 발생도 30% 이상

③ 무역집약도 30% 이상인 업종

- **시행초기 할당대상업체 비용 부담 완화 → 산업계 부담 최소화, 제도 연착륙**
- **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실현**
- **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분류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에서 정함**

시행령 주요내용 (입법예고 기준)

3 할당 대상업체별 할당, 조정, 취소

◈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·조정·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심의·조정을 거쳐 확정·시행토록 함

※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 (반장 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)을 설치

4 조기감축실적의 인정

◈ 조기 감축실적에 대해서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% 범위에서 추가 할당

배출량거래제 시행 이전 목표관리제 하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

5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

◈ 시설의 신·증설, 일부 사업장의 양수, 합병 → 사후적으로 추가 할당

◈ 생산품목의 변경, 사업계획의 변경 → 이행년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% 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% 범위에서 추가 할당

시행령 주요내용 (입법예고 기준)

6 상쇄의 인정 범위 및 한도

◈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정·보고·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→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함

◈ 배출권 제출한도의 10% 범위 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

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의 50% 이내로 하고,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의 해외 상쇄는 불인정함

7 배출권 거래소 지정

◈ 주무관청은 일정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음

※ 배출권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술·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주무관청이 정함

8 제3자 시장 참여

◈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동안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시장에 참여 가능

※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정책금융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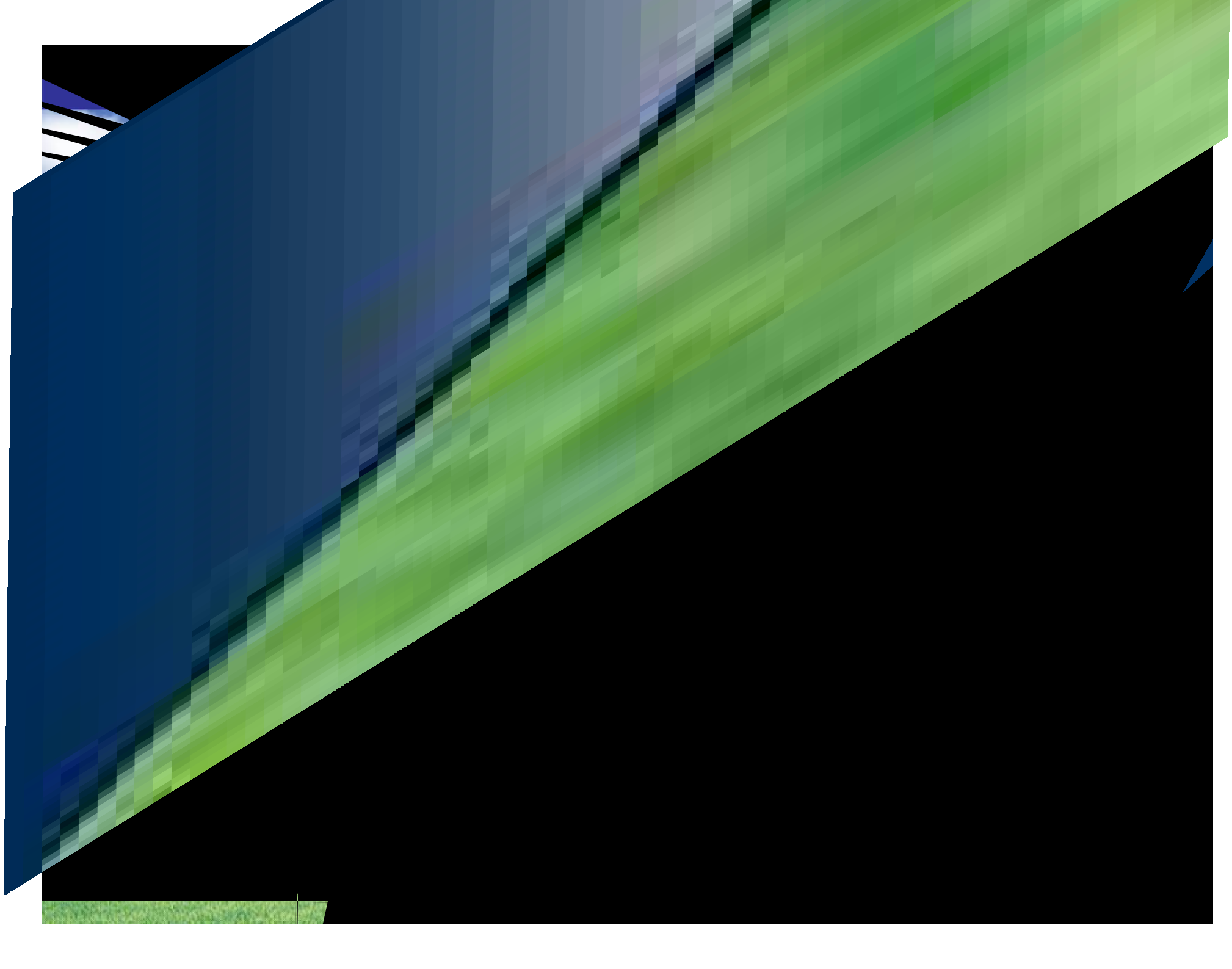

기업 지원방안

국내기업 대응현황

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대응 현황

관리업체의 **12**년도 감축목표 이행 수단 **(**배출량 상위 **50**대 기업**)**

국가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결과 ('11.7월 정부 발표)

부문별 감축 잠재량 결과

※ '11.07.06일자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참고

감축률 수송부문이 34.3%로 가장 높으며 건물부문 26.9%, 산업 발전부문은 26.7%

감축비중 전체감축량 대비 산업(에너지: 9.8%, 공정: 24.2%), 발전 28%, 건물 20%, 수송 15%

부문별 배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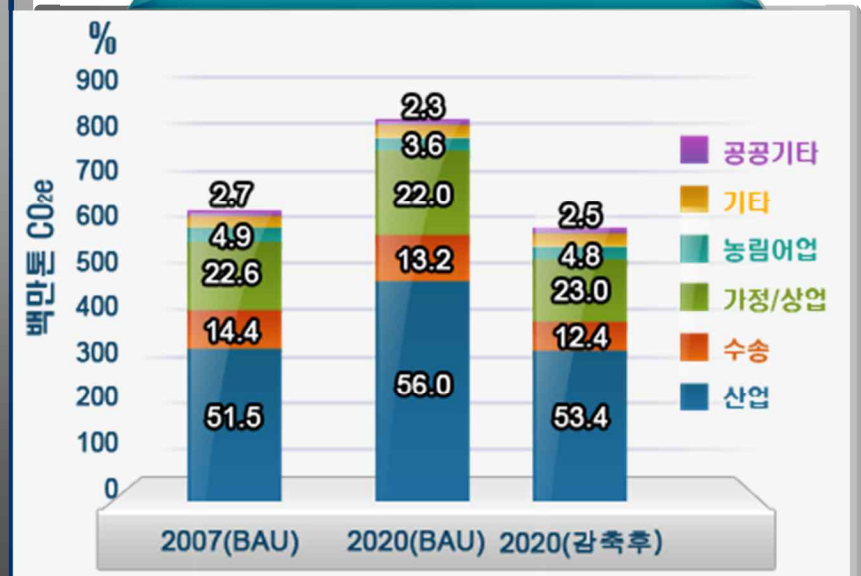

20년 부문별 감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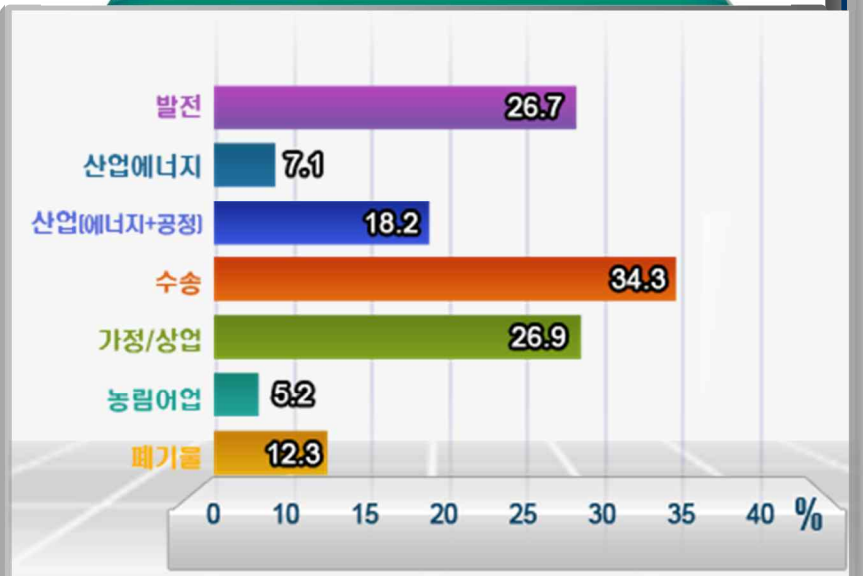

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및 감축수단 (IEA)

- **전 세계 대기중 CO2농도는 금세기말까지 1,000ppm으로 상승할 전망** (평균온도 6℃상승)

  * **CO2농도(현재 추세 유지시)** : (**산업혁명 이전**) 280ppm → (**현재**) 380ppm → (2100**년**) 1,000ppm

- **CO2농도를 450ppm**(평균온도 2℃상승)**에서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시나리오 발표** ('09, IEA)

  - 시나리오 추진시 필요한 **주요 감축수단**으로 **에너지 효율개선, 신재생에너지, 원자력 확대, CCS**(Carbon Capture and Storage) **등을 제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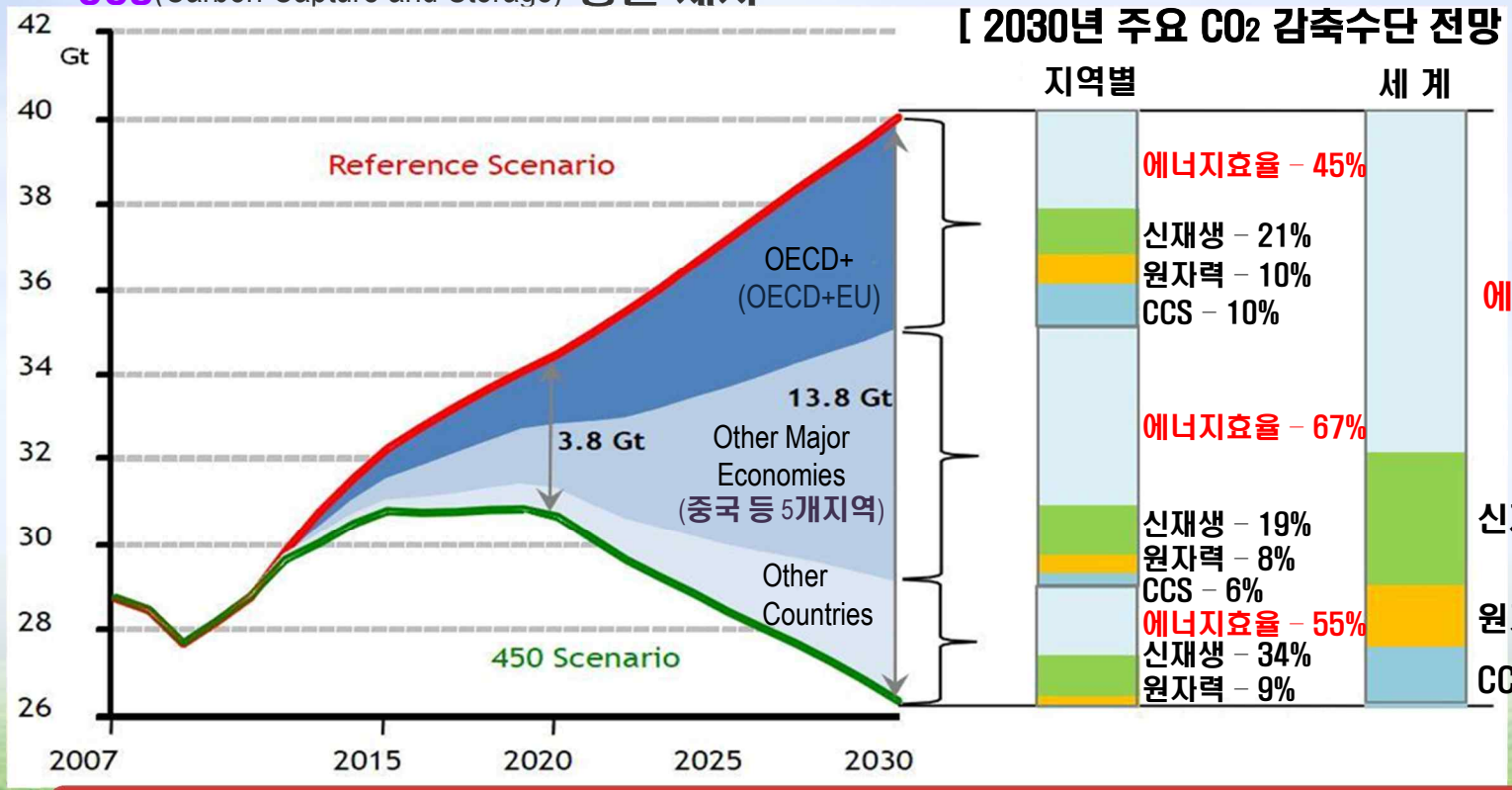

[2030년 주요 CO2 감축수단 전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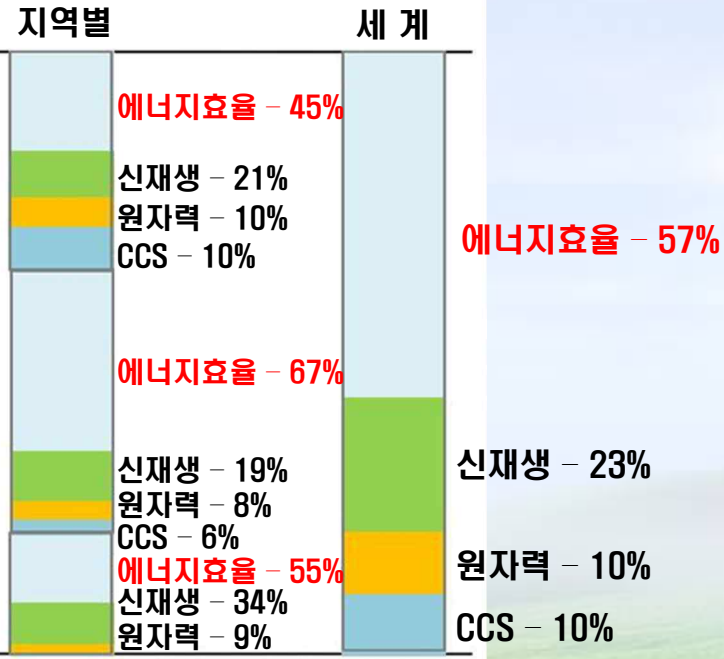

에너지 효율개선(에너지절약, 발전효율제고 등)**이 전체 감축량의 약 60% 차지할 전망**

국내 KVER 등록사업 설비 및 기술 현황

등록사업 대상설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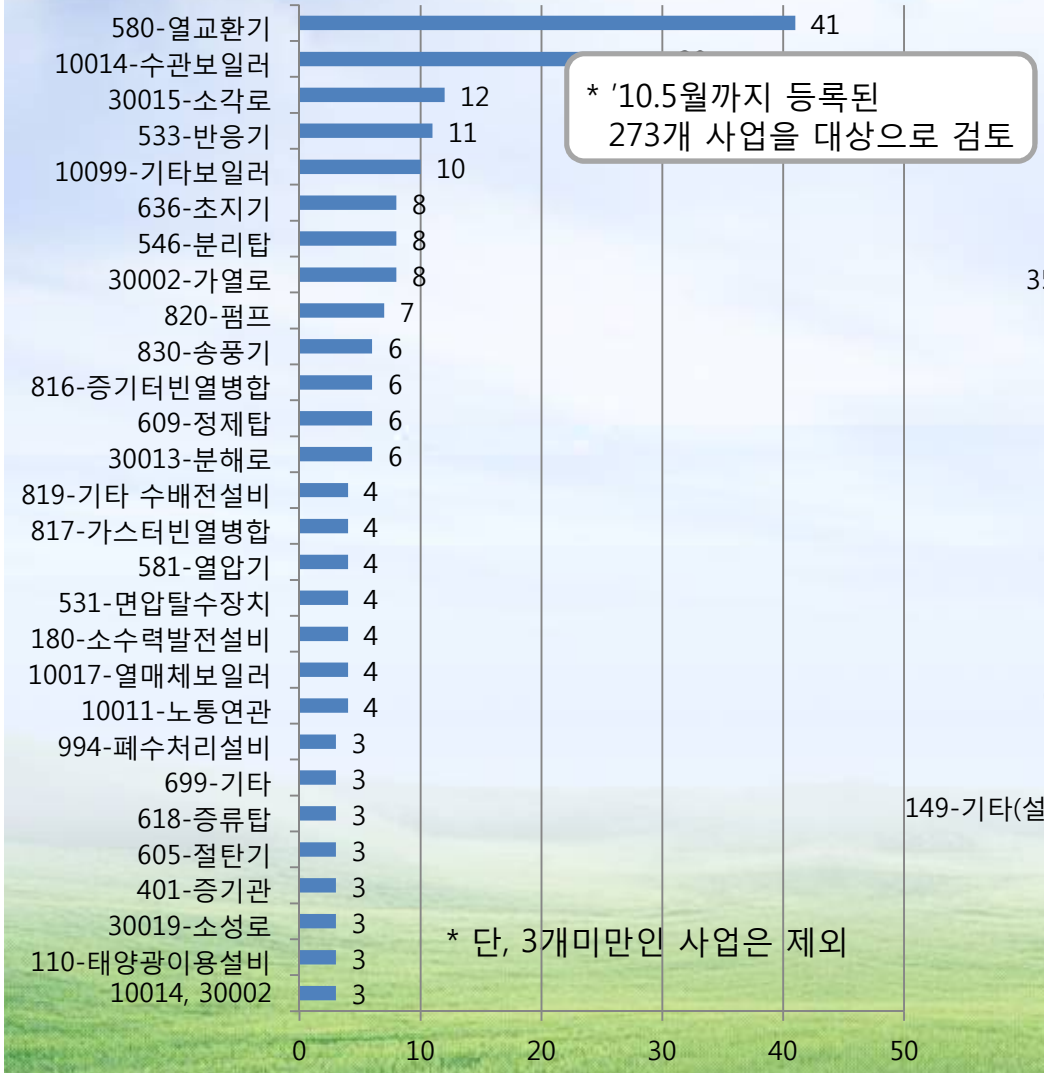

* '10.5월까지 등록된 273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

* 단, 3개미만인 사업은 제외

등록사업 적용기술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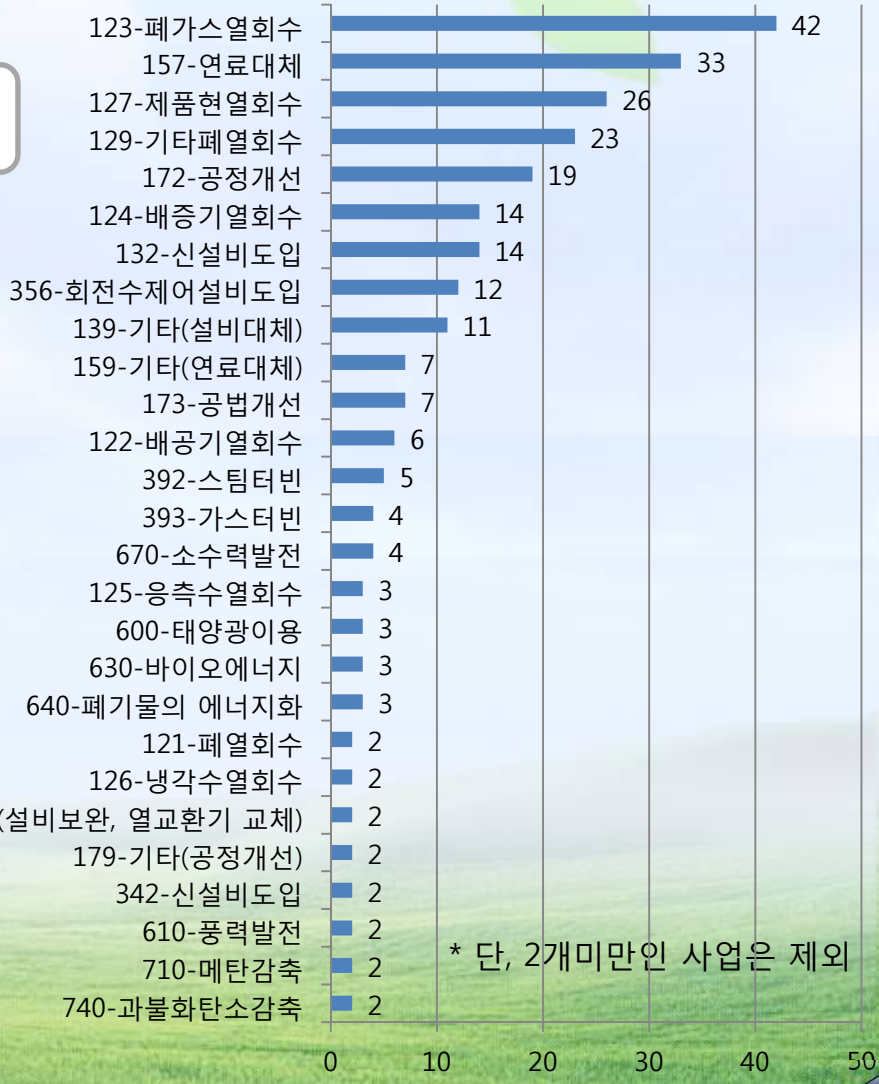

* 단, 2개미만인 사업은 제외

기업 지원방안 (1)

기술 및 자금 지원 현황 (현행 제도)

부 문	지원프로그램	지원대상		
감축기술 지원	의무화 진단비용 보조			
	중소기업 자율진단지원	중소기업		
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지원	대·중소기업		
	에너지서포터 지원			
설치자금 지원	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지원	대·중소기업		
	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	대·중소기업		
	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	산업단지 공장건물 발전소 등		

기업 지원방안 (2)

인증, 기반구축, 해외시장 진출 지원 (현행 제도)

부문	지원프로그램	지원대상		
감축인증 및 기반구축	대·중소기업 탄소감축 협력사업 그린크레딧 지원	중소기업		
	온실가스감축등록 지원	대·중소기업		
	사내배출권거래제 지원	관리업체		
해외시장 진출지원	해외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	대·중소기업		
	신재생설비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	신재생설비 수출기업	모델	

향후 방향

◈ 온실가스감축 지원 관련 신 지원 메뉴 (예시 : 온실가스감축설비 관련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) 확보, 탄소경영시스템 도입관련지원, 기후변화대응 컨설팅 등

-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 내지 시스템 안정화와 관련된 지원 위주로 재편 필요

엠블럼 이름 : SeSe

"Save energy, Save earth"

감사합니다